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 심사보고

2004.7.20.(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4년 7월 5일

○ 회부일자 : 2004년 7월 5일

다. 상정일자 :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4. 7. 14 :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제정 (2004.1.29. 법률 제7124호)되어 2004. 7. 30.부터 시행됨에 따라
-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가. 출입국관계법령에 의거 영주체류자격을 갖춘 20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제3조)
- 나. 주민투표에 부칠수 있는 투표대상을 정함 (제4조)
- 다.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6분의 1로 함 (제5조)
- 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180일간으로 함 (제7조)
- 마. 청구인서명부에는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함 (제8조)
- 바. 청구인서명부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열람기간·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도록 함 (제10조)
- 사. 일몰시간 후부터 다음날 일출시간 전까지는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함 (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 상 만)

○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이 제정 공포(2004.1.29, 법률 제07124호)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2004.5.21~6.10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금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조제2항 외국인의 주민투표자격, 제7조제1항 주민투표의 대상, 제9조제2항 주민투표 청구인 수, 제10조제3항 서명요청기간, 제12조제2항 서명 방식과 절차, 제7항 청구인서명부 보정기간, 제9항 주민투표청구에 관한사항, 제22조제2항 야간 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금지시간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본 조례안 중

안 제4조에서는 법 제7조제1항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한 주민투표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4조 5호에서 정한 충청북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안 제5조 주민투표 실시요건 중 주민에 투표청구의 경우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별 인구수에 따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1/20까지 다르게 정하도록 권고한 비율에 따라 1/16로 규정하였으나,

주민투표권자 수의 1/16일 때 68천명, 1/20일 때 54.3천명의 서명을 안 제7조의 규정에 따라 180일 동안 받는 것은 사업의 적시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실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1조의 서명보정기간을 15일로 규정한 사유와
안 제12조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본 조례로 규정하려는 주민투표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방법으로 오늘날 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와 구별되고, 또한, 주민의 선출직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수 정 안 요 지

가. 수정이유

- 주민투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요건 중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투표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투표 운동 관련 호별방문 금지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주민투표의 대상 중 대규모 투자사업을 총액 500억이상 투자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제3호)
-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함.(안 제5조제2항)
- 투표운동 관련 호별방문 금지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함.(안 제16조)

7.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4. 7. 14.

제안자 : 이 필 용 의원의

1. 수정이유

- 주민투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요건 중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투표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투표운동 관련 호별방문 금지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주민투표의 대상 중 대규모 투자사업을 총액 500억이상 투자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제3호)
-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함.(안 제5조제2항)
- 투표운동 관련 호별방문 금지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함.(안 제16조)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호중 “대규모 투자사업”을 “총액 500억이상 투자사업”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중 “16분의 1이상으로”를 “20분의 1이상으로”로 한다.

안 제16조 전단중 “일몰시간 후부터 다음날 일출시간 전까지는”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으로 한다.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민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권은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충청북도 구역안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1.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서로 대립되는 정책결정 사항
2. 도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충청북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총액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
4. 다른 법령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

제5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충청북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서 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도지사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과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 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주민투표 실시에 찬성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서명부는 시·군을 구분하여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해당 시·군의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열람기간·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은 관계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5일간으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도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회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언론인 또는 등록된 민간사회단체대표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심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회의)①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심의회 운영)①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④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처리기간) ①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

든지 투표운동과 관련하여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옥외집회를 할 수 있다.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공표·광고방법) 이 조례에 의한 공표와 광고는 도보·게시판 또는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도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교 부 신 청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2호서식 】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지사 (인)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 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참고 : 주민투표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서명 요청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지사 (인)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청구인 서명부의 표지)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주민수 : 명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시 · 군 ○○읍 · 면동)

번호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자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

【 별지 제6호서식 】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관계법령 발췌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②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③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

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①주민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

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자치구·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 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⑨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서명부의 작성 및 제출방법,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2.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금지 장소에서의 연설행위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第13條의2 (住民投票)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地方自治團體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住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②住民投票의 대상, 發議者, 發議要件, 기타 投票節次등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 입법예고

- 기 간 : 2004. 5. 21 ~ 6. 10 (20일간)
- 방 법 : 도보 및 도 홈페이지 게재

☐ 의견제출내용

1. 제4조 주민투표 대상

입법예고안	제출의견	결과
	1.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결정 사항	반영
2. 법 제7조제2항제5호 이외에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u>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3..... <u>공영개발의 승인 및 주요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u>	미반영
3. 법령상기금 이외에 각 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u>충북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u>	4. 법령상기금 이외에 각 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u>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u>	반영
5.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u>환경</u>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미반영

[미반영 사유]

○ 공영개발의 승인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 관계서류 작성 등 입안과정에서 관련정보가 누설되어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어 보안을 유지해야 되므로 **조례상 명기 불가** (지역개발과 의견)

○ 주민의 복리·안정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 환경이 주민의 복리·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주민 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입법예고안	제출의견	결과
법 제9조 제2항의...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u>16분의 1</u> 로 한다.	법 제9조 제2항의...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u>20분의 1</u> 로 한다.	미반영

[미반영 사유]

- 참여의식·책임의식 제고 및 주민투표의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1/2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대의민주제의 흠결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최후의 해결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과 투표의 남발성 방지 측면에서 보면 1/5을 적용하여야 함
- 따라서 도 조례는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의 비율인 1/16 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주민투표권자 수 : 1,086,799 명 ('03.12.31 기준, 선거권이 있는자)
-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 : 68,000명 정도 (주민투표권자 수의 1/16), 6.3%
- ※ 주민투표권자 수의 1/20 = 54,300명 정도 (5%)
- 1/20 과 1/16 의 차 = 13,700명

<행정자치부의 권고비율>

인구규모 (20세이상 주민수)	적용비율	인구규모 (20세이상 주민수)	적용비율
1만5천 미만	1/5	25만 ~ 30만	1/13
1만5천 ~ 3만	1/6	30만 ~ 50만	1/14
3만 ~ 5만	1/7	50만 ~ 100만	1/15
5만 ~ 7만	1/8	100만 ~ 150만	1/16
7만 ~ 10만	1/9	150만 ~ 200만	1/17
10만 ~ 15만	1/10	200만 ~ 250만	1/18
15만 ~ 20만	1/11	250만 ~ 500만	1/19
20만 ~ 25만	1/12	500만 이상	1/20

<타 시·도의 적용비율>

○ 표준비율 적용 시·도

- 서울 1/20, 대구 1/17, 충남 1/16, 울산 1/15, 경기 1/20
전북 1/16, 전남 1/17, 경북 1/17, 경남 1/20, 제주 1/14

○ 표준비율 미적용 시·도

- 부산 1/20 (1/19), 인천 1/20 (1/17), 광주 1/17 (1/15)
대전 1/20 (1/16), 강원 1/20 (1/16)

※ ()는 표준비율

3. 제11조 서명보정기간

입법예고안	제출의견	결과
법 제12조제7항의...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법 제12조제7항의... 서명보정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미반영

[미반영 사유]

○ 서명보정기간이란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투표청구 주민수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이를 보정하게 하는 기간을 말하는데,

○ 서명보정기간을 15일 이내로 정한 이유는

- 조례개폐청구제도의 연서주민수 18,000명보다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가 3.7배 이상 많은 점을 감안하여
- 조례개폐청구제도의 보정기간인 5일 보다 다소 길게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적용하여 15일로 정하였음

○ 이 기간이 짧다면 20일로 조정할 수는 있으나

보정인원이 최소한이 되도록 유효주민에게 정확한 서명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무효서명, 이의신청 등을 고려하여 투표청구 주민수 보다 다소 여유있게 서명을 받아야 하므로 보정기간을 15일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입법예고안	제출의견	결과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위원 중 공무원은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미반영
④ 제2항의 규정의 의한...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언론인, 등록된 민간사회단체 대표	④ 제3항의 규정의 의한...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언론인, 등록된 민간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④ 심의회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미반영 사유]

○ 주민투표청구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였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자가 1명이 더 많게 됨
(예, 위원구성을 11명으로 했을 경우 : 공무원 5명, 공무원이 아닌자 6명)

○ 주민투표청구 심의회는

- 청구한 투표대상이 도 조례로 정한 투표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 도지사가 투표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 할 경우 주민투표청구 심의회를 개최하여 그 의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기능을 담당하므로

- 심의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단체장이 아닌 부단체장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 투표청구심의회는 도지사 아래에 두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민간위원장으로 하여 결정하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행정부지사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봄

5. 제16조 투표운동의 제한

입법예고안	제출의견	결과
제 16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 투표운동과 관련하여 <u>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u> 는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옥외집회를 할 수 없다.	제 16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 ... 투표운동과 관련하여 <u>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u> 는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옥외집회를 할 수 없다.	반영

[반영 사유]

-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최대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
 - 출퇴근시간 및 식사시간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측면과 안전을 고려하여
 - 일몰시간 후부터 다음날 일출시간 전까지는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반영함